



제2289호

2026년 7월 23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례

○ 조 례 제 2 2 9 8 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획 예 산 과	2
○ 조 례 제 2 2 9 9 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기 업 지 원 과	4
○ 조 례 제 2 3 0 0 호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 무 1 과	7
○ 조 례 제 2 3 0 1 호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전 총 괄 과	10
○ 조 례 제 2 3 0 2 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복 지 정 책 과	12
○ 조 례 제 2 3 0 3 호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 지 정 책 과	23
○ 조 례 제 2 3 0 4 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복 지 정 책 과	29
○ 조 례 제 2 3 0 5 호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복 지 정 책 과	32
○ 조 례 제 2 3 0 6 호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보 육 정 책 과	34
○ 조 례 제 2 3 0 7 호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 원 녹 지 과	36
○ 조 례 제 2 3 0 8 호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 통 행 정 과	39
○ 조 례 제 2 3 0 9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교 통 행 정 과	42

공 고

○ 공 고 제 1 3 9 3 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자 동 차 관 리 과	45
------------------------	-------------------------	-----------------------	----

회 람								
--------	--	--	--	--	--	--	--	--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병 래

2026년 7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2298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민원 처리 담당자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
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 원고(민원인 등)로부터 구 또는 공무원이 피소된 경우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제한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또는 공무원이 제소 등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단서 조항 신설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병 래

2026년 7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2299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국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호부터 제5호”를 “가목부터 바목”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동구의회 의원 1명

나. 구금고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다. 신용보증기금 남동구 관할 지점장

라. 기술보증기금 남동구 관할 지점장

마.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이 지정한 사람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용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1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선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용어 정비 및 위원회의 위원 사항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융자금 대출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 정비 및 위원회의 위원 사항 정비
: (안 제1조 및 제9조제3항, 제9조제6항)
- 융자대상자 선정 후 대출기한 및 연장기한 근거 조항 신설
: (안 제17조제2항)
- 대출기한 및 연장기한 내 미대출 시 선정 통보 실효 근거 조항 신설
: (안 제17조제3항)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병 래

2026년 7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2300호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회계법」 제38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정한 「은행법」”을 “지정한 「은행법」”으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을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을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다만, 「지방공기업법」”을 “다만,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구민의 이용**”을 “**구민 이용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협력**”을 “**협력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의 사항

제11조제1항 중 “**공고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를 “**공고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지방재정법」 제34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및 별표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금고지정 기준 세부사항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조항 신설(안 제11조제5항)
- 금고약정 금리 공개 및 방법 조항 신설(안 제12조제5항)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정비(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배점기준 일부 변경
 -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항목 및 세부항목 명칭 일부 변경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정비(안 별표 2)
 - 항목 2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추가 배점 불가 규정 삭제
 - 항목 2 및 항목 5의 가목에 다른 평가 항목 순위 간 편차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는 차등 적용 규정 삭제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병 래

2026년 7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2301호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타 회계 예탁운용 불가 규정 삭제 : (안 제3조제4항 삭제)

조례

남동구의회의에서 의결된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병 래

2026년 7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2302호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조직으로,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등 보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연합회, 사무국을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분과)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

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행사 개최 및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격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동 실정에 맞게 동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① 남동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동 연합회”라 한다)는 각 동 협의체 민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동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동 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제안
2. 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도모
3.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협의체의 연계협력

제9조(위원의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며,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연합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민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각 협의체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④ 사무국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5조(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각 협의체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 연 4회 이상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의결결과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 임기 및 부위원장 선출 등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기구(안 제1조~제3조)
-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등(안 제4조~제9조)
-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사항 등(안 제10조~제14조)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 의결사항의 처리(안 제17조)
-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그 밖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3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병 래

2026년 7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2303호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국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8만원 이내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10만원 이내
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2만5천원 이내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참

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 ⑤ 수당(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망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및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날을 수당지급일로 한다.

③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또는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대상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구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 (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 기준 설정 : (안 제3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수당 신청 및 대리수령 절차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수당 지급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수당 지급 중지 사유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수당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유사한 성격의 수당과 중복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참전유공자 수당 등 각종 신청서식 : (안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병 래

2026년 7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2304호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

자 명예수당 또는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신청한 경우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배우자수당을 신청한”을 “신청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속하는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배우자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을 “속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훈예우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보훈예우수당”으로 한다.

제11조의 본문과 각 호의 부분 중 “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급권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당 또는 배우자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수당 또는 배우자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수당, 배우자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참전유공자”를 “상이군경”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참전유공자 □”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 및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 관련 지원 규정을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분리 규정
-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정비 : (안 제8조제2항제2호)
- 그 밖에 참전유공자 관련 지원 규정 분리에 따른 용어 및 서식 정비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병 래

2026년 7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2305호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국정과제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및 법제처 의견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명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치법규 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임 근거 및 조항 명시 (안 제1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병 래

2026년 7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2306호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부모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2026년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지침)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연회비 면제 대상에 청소년부모가족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연회비 면제 대상에 청소년부모가족 조항 신설 : (안 제9조제3항제5호)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병 래

2026년 7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2307호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를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를 “소관사무의 국장이 되고”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간사를”을 “간사 1명을”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 및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위원장 지정방식 변경(안 제3조제2항)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5항)
- 간사 규정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병 래

2026년 7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2308호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동구에 두는”을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통안전 관련 주요정책”을 “교통안전정책업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남동구 자동차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남동구 도로교통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인천논현경찰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인천남동소방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간사와 서기)”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간사 1명 과 서기”를 “간사”로,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이다”를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이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 정비 : (안 제1조 및 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신설 (안 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병 래

2026년 7월 23일

남동구 조례 제2309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50”을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30”을 “5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
16. 공영주차장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에 위치하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 주민 등에 대

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요금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초 2시간 주차 요금 면제

별표 1 비고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경형 및 이륜자동차 이용자와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동 행정복지센터 내 또는 인접 부지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 적용 기준을 명문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형 및 이륜자동차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개정 : (안 제5조제2호)
- 병역명문가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개정 : (안 제5조제11조)
- 장기기증자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신설 : (안 제5조제14호)
-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신설 : (안 제5조제15호)
- 동 행정복지센터 내 및 인접 공영주차장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 시 감면 혜택 신설 : (안 제5조제16호)
- 제5조와 별표1제6호에 따른 감면 중복 제한 신설 :
(안 별표1제6호)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6-1393호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관내 장기간 무단방치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자진이동 안내문을 발송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하나 소유주 미상으로 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7. 22.

남 동 구 청 장

1. 공 고 명 :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07.23. ~ 2026.08.07.
3. 공고대상 : 이륜차 26대
4. 공고내용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이동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내역

연번	접수 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수취인명	주소	발송일자	미배달사유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최초확인일	견인일	보관장소	비고
1	2026-00071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417-2 (파라다이스 아파트 담벼락)	2026-01-30	2026-04-14	(주)인천폐차사업소	
2	2026-00072	번호판 없음	삼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 1143-17	2026-01-08	2026-04-09	(주)인천폐차사업소	
3	2026-00073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279(형진프라자주차장 입구쪽)	2026-02-12	2026-04-10	(주)인천폐차사업소	
4	2026-00074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 1484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와 동남아파트 사이 일방통행길 중간지점)	2026-02-26	2026-04-13	(주)인천폐차사업소	
5	2026-00101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고잔동 658번지 108블럭 1롯데(청능대로448번길150)	2026-03-13	2026-05-18	(주)인천폐차사업소	
6	2026-00102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능허대로 747 금강정말과 프레시타운 사이 전신주 앞 이면도로	2026-03-20	2026-05-12	(주)인천폐차사업소	
7	2026-00144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만수동 109-241	2026-04-24	2026-07-01	(주)인천폐차사업소	
8	2026-00145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592-12	2026-04-24	2026-07-01	(주)인천폐차사업소	
9	2026-00146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715	2026-05-19	2026-07-01	(주)인천폐차사업소	
10	2026-00148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612-8	2026-05-29	2026-07-01	(주)인천폐차사업소	
11	2026-00149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111-60	2026-05-29	2026-07-01	(주)인천폐차사업소	
12	2026-00150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616-29 새마을금고 앞	2026-05-22	2026-07-01	(주)인천폐차사업소	

13	2026-00077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능허대로625번길 140-4 전봇대 앞	2026-02-12	2026-04-20	주식회사 한신편차	
14	2026-00078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남동대로692번길 13-7 골드맨션 앞	2026-02-23	2026-04-20	주식회사 한신편차	
15	2026-00080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장수동 724-3	2026-01-19	2026-04-20	주식회사 한신편차	
16	2026-00081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소래역서로2번길 26 한화파크빌	2026-01-24	2026-04-20	주식회사 한신편차	
17	2026-00082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lh2단지 지하주차장(제1주차장)	2026-01-22	2026-04-22	주식회사 한신편차	
18	2026-00083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lh2단지 지하주차장(제1주차장)	2026-01-22	2026-04-22	주식회사 한신편차	
19	2026-00084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lh2단지 지하주차장(제2주차장)	2026-01-22	2026-04-22	주식회사 한신편차	
20	2026-00119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남로355번길 61-12 석나하이츠	2025-10-20	2026-06-02	주식회사 한신편차	
21	2026-00120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고개로12(상가 뒤쪽 주차장)	2026-03-13	2026-06-02	주식회사 한신편차	
22	2026-00121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941 (간석주공공인중개사무소 옆 주차장)	2026-03-20	2026-06-01	주식회사 한신편차	
23	2026-00122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간석동 941 (간석주공공인중개사무소 옆 주차장)	2026-03-20	2026-06-01	주식회사 한신편차	
24	2026-00123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남로355번길 35	2026-04-30	2026-06-02	주식회사 한신편차	
25	2026-00151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구월동 811-5	2026-04-22	2026-07-14	주식회사 한신편차	
26	2026-00152	번호판 없음	이륜차	미상	미상	미발송	소유주 미상	논현동 109-176 쓰레기분리수거장 옆	2026-05-27	2026-07-13	주식회사 한신편차	

소유주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공고 대상

관 리 번 호	2026-0007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1-30 ○ 견인일 : 2026-04-14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동 417-2(파라다이스 아파트 담벼락)
	2026-0007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1-08 ○ 견인일 : 2026-04-09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 1143-17
	2026-0007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2-12 ○ 견인일 : 2026-04-10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동 279(형진프라자주차장 입구쪽)
	2026-0007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2-26 ○ 견인일 : 2026-04-13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구월동 1484 (구월1동 행정복지센터와 동남아파트 사이 일방통행길 중간지점)
	2026-0010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3-13 ○ 견인일 : 2026-05-18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고잔동 658번지 108블럭 1롯데(청능대로 448번길150)

관 리 변 화	2026-0010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3-20 ○ 견 인 일 : 2026-05-12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능허대로 747 금강정밀과 프레시타운 사 이 전신주 앞 이면도로
	2026-0014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4-24 ○ 견 인 일 : 2026-07-01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만수동 109-241
	2026-00145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4-24 ○ 견 인 일 : 2026-07-01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 592-12
	2026-00146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5-19 ○ 견 인 일 : 2026-07-01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 715
	2026-0014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5-18 ○ 견 인 일 : 2026-07-01 ○ 보관장소 : (주)인천폐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 612-8

관 리 포 재	2026-0014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5-29 ○ 견 인 일 : 2026-07-01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논현동 111-60
	2026-0015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5-22 ○ 견 인 일 : 2026-07-01 ○ 보관장소 : (주)인천페차사업소 ○ 방치장소 : 간석동 616-29 새마을금고 앞
	2026-00077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2-12 ○ 견 인 일 : 2026-04-20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펜차 ○ 방치장소 : 능허대로625번길 140-4 전봇대 앞
	2026-00078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2-23 ○ 견 인 일 : 2026-04-20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펜차 ○ 방치장소 : 남동대로692번길 13-7 골드맨션 앞
	2026-0008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1-19 ○ 견 인 일 : 2026-04-20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펜차 ○ 방치장소 : 장수동 724-3

관 리 번 호	2026-0008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1-24 ○ 견 인 일 : 2026-04-20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소래역서로2번길 26 한화파크빌
	2026-0008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1-22 ○ 견 인 일 : 2026-04-22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간석1h2단지 지하주차장(제1주차장)
	2026-0008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1-22 ○ 견 인 일 : 2026-04-22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간석1h2단지 지하주차장(제1주차장)
	2026-00084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1-22 ○ 견 인 일 : 2026-04-22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간석1h2단지 지하주차장(제2주차장)
	2026-00119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5-10-20 ○ 견 인 일 : 2026-06-02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구월남로355번길 61-12 석나하이츠

관 리 변 제	2026-00120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3-13 ○ 견인일 : 2026-06-02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논고개로12(상가 뒤쪽 주차장)
	2026-0012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3-20 ○ 견인일 : 2026-06-01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간석동 941(간석주공공인중개사무소 옆 주차장)
	2026-0012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3-20 ○ 견인일 : 2026-06-01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간석동 941(간석주공공인중개사무소 옆 주차장)
	2026-00123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4-30 ○ 견인일 : 2026-06-02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구월남로355번길 35
	2026-00151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유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4-22 ○ 견인일 : 2026-07-14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페차 ○ 방치장소 : 구월동 811-5

관 리 면 적	2026-00152	
		○ 차량번호 : 등록번호판 없음 ○ 소 유 자 : 미상 ○ 최초확인일 : 2026-05-27 ○ 견 인 일 : 2026-07-13 ○ 보관장소 : 주식회사 한신편차 ○ 방치장소 : 논현동 109-176 쓰레기분리수거장 옆